

코웨이 주식회사 이사회규정

제정 2003.08.01
개정 2005.06.09
2010.02.19
2012.11.28
2013.08.01
2018.03.23
2019.04.29
2020.02.14

제1장 총칙

제 1 조[목적]이 규정은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 조[권한]

-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

제 2장 구성

제 4 조[구성]이사회는 이사 전원(사외이사 및 기타 비상근이사 포함)으로 구성한다.

제 5 조[의장]

- ①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가 선임하는 이사로 한다.
- ② 이사회의 의장이 유고로 인하여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이사의 순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이사회는 임시의장을 선임할 수 있다.

제 3장 회의

제 6 조[종류]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매 분기당 1 회 이상 개최한다.
- 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 7 조 [소집권자]

- ① 이사회는 이사회의 의장이 소집한다.
- ② 각 이사는 이사회의 의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이사회의 의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8 조 [소집절차]

-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3 일전에 각 이사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는 문서, 전자문서를 이용하거나 구두(유·무선통신 포함)로도 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제 1 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수 있다.

제 9 조 [결의방법]

-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단, 상법 제 397 조의 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및 제 398 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의 승인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④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10 조 [부의사항]

-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1) 주주총회의 소집
 - 2)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허용
 - 3) 영업보고서의 승인
 - 4) 재무제표의 승인
 - 5) 정관의 변경
 - 6) 자본의 감소
 - 7)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회사의 계속 등
 - 8)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 9)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 10) 이사의 선임 및 해임
 - 11) 주식의 액면 미달 발행
 - 12)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 13) 현금, 주식, 현물배당 결정
 - 14) 이사의 보수
 - 15)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 16) 법정준비금의 감액

- 17) 주주총회 의장 선임(이사회가 주총 의장을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임)
- 18)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2. 경영 등에 관한 사항

- 1) 회사 경영의 기본 방침과 중요 전략의 결정 및 변경
- 2)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의 수립 및 변경
- 3) 신규사업 추진, 사업철수, 전략적 제휴, M&A 등 중요 사업 전략
- 4)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5) <삭제>
- 6) 공동대표의 결정
- 7)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 8) 이사회내 위원회(감사위원회는 제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 9) 이사회내 위원회(감사위원회는 제외)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 10)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 11)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의 규정 제정, 개정 및 폐지
- 12) <삭제>
- 13) 노조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 14) 지점, 공장,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 이전 및 폐지
- 15)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
- 16)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 17) <삭제>
- 18) 준법지원인의 선임 및 해임, 준법통제기준의 제정, 개정 및 폐지

3. 재무 등에 관한 사항

[법규·정관상 의무사항]

- 1) 준비금의 자본전입
- 2) 결손의 처분
- 3) 신주의 발행
- 4)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 대한 사채발행의 위임
- 5) 전환사채의 발행
- 6)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7)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신탁계약의 체결, 해지 또는 연장 결정 포함)
- 8) 자기주식의 소각

[공시규정상 추가사항]

- 1) 해외증권시장에 주권 등 상장결정
- 2) 해외증권시장에 상장 후 해외거래소 등에 기업내용에 대한 정기, 수시 신고
- 3) 해외증권시장 등에서의 상장폐지 결정, 매매거래정지, 상장폐지 조치 등
- 4) 주권의 상장폐지 결정
- 5) 영업의 일부(연결 매출액 2.5%이상) 또는 전부의 정지에 관한 결정
- 6) 연결 매출액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 7) 연결 매출액의 2.5% 이상의 단일판매계약 또는 공급계약의 체결 및 해지
- 8) 연결 매출액의 2.5% 이상의 제품에 대한 수거, 파기 등 결정
- 9) 연결 매출액의 2.5% 이상을 생산하는 공장에서의 생산활동의 중단, 폐업 및 재개
- 10) 연결 자기자본의 5% 이상의 신규시설투자, 시설증설 또는 별도 공장의 신설

- 11) 연결 자산총액의 2.5% 이상의 자산의 취득 및 처분(특정금전신탁 등 포함)
- 12) 연결 자기자본의 2.5% 이상의 타법인 주식, 출자증권의 취득 및 처분
- 13) 연결 자기자본의 5% 이상의 단기차입금의 증가
- 14) 연결 자기자본의 2.5% 이상의 채무인수, 채무면제 결정
- 15) 연결 자기자본의 2.5% 이상의 담보제공, 채무보증, 선급금, 가지급금, 금전대여 또는 증권대여에 관한 결정
- 16) 자산재평가 실시
- 17) 회계처리기준의 중대한 변경
- 18) 유상증자시 실권주식 처리
- 19) 회생절차개시신청 및 파산신청

4. 이사에 관한 사항

- 1)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
- 2) 이사의 회사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
- 3) 타회사의 임원 겸직

5. 기타

- 1) 중요한 소송의 제기
-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 3) 회사의 최대주주 (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및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하는 거래의 승인 (단, 관련 법령상 승인이 요구되지 않은 거래는 제외)
- 4)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5) <삭제>

②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 결과
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한 사항
3.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4. 내부회계관리 운영 보고

제 11 조 [이사회내 위원회]

- ①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내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단,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 ④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12 조 [관계인 등의 출석]

- 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자문위원이나 참관인을 두고 이사회에 출석하도록 할 수 있다.

제 13 조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감독권]

- 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 1 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 14 조 [의사록]

-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 ③ 주주는 영업 시간 내에 이사회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회사는 제 3 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부칙

1.이 규정은 2003년 08월 0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부칙

1.이 규정은 2005년 06월 0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이 규정은 2010년 0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이 규정은 2012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이 규정은 2013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이 규정은 2018년 0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01 규정은 2019년 0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01 규정은 2020년 02월 14일부터 시행한다.